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60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이용우·한준호·문정복

이기헌 · 임미애 · 박상혁

장종태 · 김주영 · 임호선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1. 20. 선고 94헌마246에서 이러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통령 직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헌법상 목적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의 공판절차 정지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임기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도록 함(안 제306조의2 신설).
- 나.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이 이 법 시행 이전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공판절차에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등).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6조의2(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판절차 정지)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임기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이 이 법 시행 이전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공파절차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306조의2(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판절차 정지) 피고인
	이 대통령인 경우 그 임기 중
	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된다.